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 의무화〉

■ 백중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6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 의무화	2

I. 개요

1.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종헌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8. 20.
- (3) 회 부 일 : 2024. 8.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 3천 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 인원은 7만 9천 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II. 검토 의견

1. 난임 등 생식건강 극복을 위한 지원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 -----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의 연혁을 보면, 제11조¹⁾의 개정(2015.12.22.)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고,

1)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7년 10월부터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 건강보험(본인부담률 30%)을 적용하여 보편적 지원을 실시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추가로 지원하였음.

□ 한편,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²⁾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회당 최대 20~110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면서, 지침에서 정한 지원내용 외 추가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지침에서 정한 지원범위(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최대지원횟수, 지원금액)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 난임지원 사업의 지방이양 경과 >

- (배경) '17.10월 건강보험 적용 후 안정적 보편지원의 토대가 마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난임지원을 위해 '22년부터 지방이양
 - 당시, 상당수 지역(13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별 자체 시책*을 마련·시행 중, 재원 이전을 통해 지방 권한 확대 및 보다 세밀한 지원 기대
 - *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지원횟수 추가, 검사비·교통비 지원, 한방난임 및 영양식품 제공 등
- (경과) 2단계 재정분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방이양 결정('21.8월) → '22.1월 지방이양
 - * 12개 부처, 41개 세부사업('22년도 26개 세부사업, '23년 15개 세부사업)
 - 행정안전부예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동 사업 이양 前 지원 지침(지원횟수 및 지원액 규모) 준수
- p .7. 참고자료 202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계획('24.2월~) 참조

□ 다만, 의무규정화할 경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지원 규모를 예측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난임에 국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³⁾ 발표(’23. 3. 28.)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핵심과제로 난임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3.7.27.)⁴⁾」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하여 2024년 현재 모든 광역시·도에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였음.
-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 수정 시술 급여의 지원 횟수를 기존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총 16회)에서 배아에 따른 구분 없이 총 20회로 통합·확대 운영함에 따라 지자체 지원사업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보건복지부 지침) >

(지원원칙)

- 2017년 10월 이후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편적 지원 후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보충적 지원

(보충적 지원 내용)

3)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중 발체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①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② 난임지원 확대, ③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4)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함.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음.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되어 있음.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내용) '24.2월 이후 변경 사항 반영

<보편적 지원> 건강보험 적용		횟수 (상한)	본인부담률		<보충적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2년 지방이양)		횟수 (상한)	지원액(상한)	
			44세 이하	45세 이상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 외 수정	신선배아 ¹⁾	20회	30%	50%	체 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²⁾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³⁾		5회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주1: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내에 이식

주2: 기존 시술 시 생성된 배아를 보관해 뒀다가 해동시켜 이식(과배란유도~배아생성 생략)

주3: 배란기에 정자처리 과정을 거친 배우자의 정액을 자궁 내로 직접 주입

* '22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마다 지원내용 등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반드시 이를 개정안과 같이 의무화할 사항은 아니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주체가 '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서 의무화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재정부	○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他 유사사례 등 고려 시 현행 유지 필요함. - 동법에서 임신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지원 등 출산 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주요 사항들 ⁵⁾ 은 재량으로 규정 중

5)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4(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

문 의 처
02)6788-5498

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202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계획('24.2월~)
--------	--

※ 음영 처리한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은 추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4.1월, 지자체별 조사 시행)

시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기타 자격요건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			시술별 회당 최대 지원금액(기준) (공통)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금액 내 일부 비급여 지원 한도(기준)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체외수정		인공 수정	구분(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체외 수정	신선배아
서울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총 25회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부산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추가) 주사제(프로게스테론) 주사 행위료 지원 (56회, 회당 1만원)		
대구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부부(여성)	16	5	(공통)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유산방지제 30만원 착상유도제 3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구분(여성 기준)	공통	44세 이하				
체외 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6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인천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광주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소득별 차등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 부부(여성) (건강보험 급여 소진자)	연 최대 4회			구분(소득 기준)	180% 이하	180% 이상	소득기준에 따른 최대금액까지 지원		
						체외 수정	신선배아	150만원		120만원	동결배아
대전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구분(여성 기준)	연령 차등 없음			기존 지침 동일	
울산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체외 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세종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구분(여성 기준)	연령 차등 없음		기존 지침 동일		
경기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체외 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강원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충북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충남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24.1월, 지자체별 조사 시행)

시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기타 자격요건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			시술별 회당 최대 지원금액(기준) (공통)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금액 내 일부 비급여 지원 한도(기준)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체외수정		인공 수정	구분(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체외 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수정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전북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소득별 차등 추가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 부부(여성) (건강보험 급여 소진자)	소진 시술별 최대 2회			구분(소득 기준)	180% 이하	180% 이상	상한 금액 내 비급여 3종 100% 지원	
						체외 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전남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추가 지원 비해당)	관내 1년 이상 거주 부부 (건강보험 급여 소진자)	제한 없음			구분(여성 기준)	연령 차등 없음		기존 지침 동일	
						체외 수정	신선배아	150만원	70만원	
경북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부부(여성)	20	5	(공통)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기존 지침 동일		
					구분(여성 기준)	연령 차등 없음				
체외 수정	신선배아				150만원	70만원				
경남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20	5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체외 수정	신선배아	150만원	70만원		
					체외 수정	신선배아	150만원	70만원		
제주	폐지	신청 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총 25회		기존 지침 동일			기존 지침 동일		

*자료: 보건복지부